

예 산 총 칙

201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13,856,881	9,415,706
일반회계	259,559,752	7,786,793
특별회계	54,297,129	1,628,914
공기업특별회계	13,571,721	407,152
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	13,571,721	407,152
기타특별회계	40,725,408	1,221,762
의료급여기금운영	1,386,307	41,589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968,628	29,059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00,000	6,000
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	9,722,065	291,662
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	12,513,648	375,409
농공지구조성사업	564,760	16,943
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	15,370,000	461,1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277,994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